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(서울시설공단)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정보공개심의위원회	7	3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
2	계약조건심의위원회	7	2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
3	기록물평가위원회	5	2	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
4	임원추천위원회	7	7	지방공기업법 재58조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해당사항 없음.			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해당사항 없음.		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해당사항 없음.			

※ 심의·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